



서울고등법원

2002. 3. 26. 판결선고	㉠
2002. 3. 26. 원본영수	

제 6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1누1266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참여연대
 피고, 항소인 국회사무총장
 변 론 종 결 2002. 3. 5.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7. 19. 선고 2000구2573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 6. 12. 원고에게 한 “2000년 5월중에 이루어진 국회의원 해외 외교활동 계획서, 일정표, 예산집행계획서 및 집행내역서”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된 관계 법령으로 별지 기재의 법령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에는 국회의원이거나 그 비서관 및 관련자 등의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

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당초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추가하여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을 적법화시킬 수 있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그러나, 가령 이를 이 사건 처분사유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보에 국외활동을 한 국회의원이나 그 비서관 또는 관련자에 관한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응 그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항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국회의원이나 그 비서관에 관한 정보는 위와 같은 국외활동이 국회의원이나 그 비서관이 직무상 행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그들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국가예산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공적인 임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라는 공익을 위해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국회의원의 위와 같은 국외활동에 대한 관련자에 관한 정보 역시, 위와 같은 국외활동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무상 행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류나 친선 또는 입법을 위한 시찰의 차원에 머무른다는 점 및 이 사건 정보 자체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국외활동상황을 기록한 것이므로 관련자에 대한 정보가 차지하는 부분은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고도의 사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 비공개를 통해 관련자가 얻을 수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이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위와 같은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항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다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3. 26.

재판장 판사 이창구 _____

 판사 김정학 _____

 판사 이선희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04-17

관계 법령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끝.